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1조(감리원의 조정등) ①(생략) ②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u>다만,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삭제(2003.2.6) <u><신설></u></p> <p><u><신설></u></p>	<p>제21조(감리원의 교체등) ①(현행과 같음) ②----- -----, <u><단서 삭제></u></p> <p>③제2항에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가 감리업자를 선정한 후 감리업자가 발주자와 계약전에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1개월 이상의 입원·부상을 사유로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교체시킨 경우에는 그 감리원을 교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7조의 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시켜 평가를 받게 하거나 다른 공사감리용역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1조의3(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①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영 제20조제2항제6호에 따라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2. 공사감리용역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p>②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가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공사감리완료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제21조의3(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①-----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업자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른 공사의 지연 등 감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지연 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27호의5서식-----</p>
<p>제22조(감리원의 업무등) ①~③(생략) <u><신설></u></p>	<p>제22조(감리원의 업무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이 당해 전체 공사기간동안 상주배치되는 때에는 당해 공사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제25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①~③(생략)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입정지처분을 한 때 및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해 설계업자·감리업자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5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①~③(현행과 같음) ④----- -----합병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p>
<p>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①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등록신청접수의 경우에는 단체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생략) <p><u><신설></u></p>	<p>제27조(등록변경신고 및 관리 등) ①----- ----- ----- ----- -----.</p> <p>1.~2. (현행과 같음) 3.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간 또는 감리업간 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등록증 원본</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3.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설계업등록대장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감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자·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된 사항을 단체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 등록신청접수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후단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생 략)</p> <p>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⑥ (생 략) ⑦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5호의5서식에 따라 단체에 <u>통보하여야 한다.</u></p> <p>제28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주소지가 다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설계업(감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1.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② (생 략)</p> <p>제29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업(감리업)양도·양수신고서 및 설계업(감리업)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의 경우 가. 나. (생 략) 다. 양도·양수에 관한 신문공고문 사본 라.~바. (생 략) 2. 법인합병신고의 경우 가.~다. (생 략) 라. 합병에 관한 신문공고문 사본 마.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p>	<p>나. 등록요건의 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 ----- ----- ----- ④ -----제1항제4호----- ----- ----- ⑤ (현행과 같음)</p> <p>제27조의2(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⑥ (현행과 같음) ⑦ -----통보(통보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28조(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①----- -----된 때에는 ----- ----- ----- 1. (현행과 같음) 2. -----(-----경우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p> <p>제29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 1. -----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바. (현행과 같음) 2. ----- 가.~다. (현행과 같음) 라. 합병공고문 사본 마. (현행과 같음) 바. 설계·감리용역에 대한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행중인 용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병신고를 수리한 때에는-----</p>

신·구조문대비표

ACT INFORMATION

현행	개정안																
<p>하여야 한다. ⑤(생략) <신설></p>	<p>----- ⑤(현행과 같음) ⑥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설계업간 또는 감리업간 종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전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영위기간 및 용역실적을 합산한다.</p>																
<p>제30조(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사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p>	<p>제30조(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①(현행과 같음)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할 때에는----- -----.</p>																
<p>[별표 1]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기간(제6조의4제1항관련) 1. (생략) 2. 교육내용 및 기간</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th> <th>교육내용</th> <th>교육기간</th> </tr> </thead> <tbody> <tr> <td>가. 양성교육</td> <td>○소양교육 ○전기관계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기기 및 전기설비의 이해 ○전기설비검사업무지침 ○감리대기산정 및 감리원배치기준(감리원에 한한다)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검토(전력기술인에 한한다)</td> <td rowspan="2">1주 (35시간 이상)</td> </tr> <tr> <td>나. 전문교육</td> <td>○소양교육 ○전기관계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전력시설물공사감리 행정실무 ○감리대기산정 및 감리원배치기준 실무(감리원에 한한다)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실무(전력기술인에 한한다) <신설></td> </tr> </tbody> </table> <p><신설></p>	종류	교육내용	교육기간	가. 양성교육	○소양교육 ○전기관계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기기 및 전기설비의 이해 ○전기설비검사업무지침 ○감리대기산정 및 감리원배치기준(감리원에 한한다)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검토(전력기술인에 한한다)	1주 (35시간 이상)	나. 전문교육	○소양교육 ○전기관계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전력시설물공사감리 행정실무 ○감리대기산정 및 감리원배치기준 실무(감리원에 한한다)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실무(전력기술인에 한한다) <신설>	<p>[별표 1]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대상 및 기간(제6조의4제1항관련) 1. (현행과 같음) 2. -----</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류</th> <th>교육내용</th> <th>교육기간</th> </tr> </thead> <tbody> <tr> <td>가. 양성교육</td> <td>○(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현행과 같음)</td> <td rowspan="2">(현행과 같음)</td> </tr> <tr> <td>나. 전문교육</td> <td>○(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현행과 같음)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td> </tr> </tbody> </table> <p>비고 : 위 표 나목의 전문교육은 교육대상자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I, II과정으로 구분 실시할 수 있다.</p>	종류	교육내용	교육기간	가. 양성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전문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현행과 같음)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종류	교육내용	교육기간															
가. 양성교육	○소양교육 ○전기관계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기기 및 전기설비의 이해 ○전기설비검사업무지침 ○감리대기산정 및 감리원배치기준(감리원에 한한다)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검토(전력기술인에 한한다)	1주 (35시간 이상)															
나. 전문교육	○소양교육 ○전기관계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전력시설물공사감리 행정실무 ○감리대기산정 및 감리원배치기준 실무(감리원에 한한다) ○전기설비별 설계도서 실무(전력기술인에 한한다) <신설>																
종류	교육내용	교육기간															
가. 양성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전문교육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현행과 같음)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별표 1의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27조의2제1항제1호관련)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4.(생략)	(생략)	(생략)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생략)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6.(생략)	(생략)	(생략)

비고

- (생략)
- 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의 자(이하 이 표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설계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평가항목·배점범위·평가방법 등을 보완하여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이하 이 표에서 “설계용역평가기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pm 10\%$ 의 범위안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각 2점의 범위안에서 가점 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평가결과 그 점수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참여업체 및 전력기술인이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

나. 참여전력기술인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

다.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 3.~5. (생략)

[별표 1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27조의2제1항제2호관련)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3.(생략)	(생략)	(생략)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생략)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에 따라 평가
5.~7.(생략)	(생략)	(생략)

비고

- 2. (생략)
-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가점·감점을 하되,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다만, 참여업체중 최고득점자의 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최고득점을 기준으로 모든 참여업체의 점수를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다.

가. · 나.(생략)

다. 참여감리원이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가점

라.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

마. (생략)

- 4.~6. (생략)

개정안

[별표 1의3]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27조의2제1항제1호관련)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4.(현행과 같음)	(좌동)	(현행과 같음)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좌동)	기술개발실적·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에 따라 평가
6.(현행과 같음)	(좌동)	(현행과 같음)

비고

- (현행과 같음)

-----참여업체 및 참여전력기술인이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5점의 범위내에서 감점하되, 평가결과 그 점수와와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삭제>

<삭제>

<삭제>

- 3.~5. (현행과 같음)

[별표 1의4]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27조의2제1항제2호관련)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1.~3.(현행과 같음)	(좌동)	(현행과 같음)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좌동)	기술개발실적·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에 따라 평가
5.~7.(현행과 같음)	(좌동)	(현행과 같음)

비고

- 2. (현행과 같음)

3. -----2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5점의 범위내에서 감점하되, 평가결과 그 점수와와의 합이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 나.(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마. (현행과 같음)

- 4.~6. (현행과 같음)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대통령령 : 제20090호
- 공포일자 : 2007. 6. 15
- 담당부처 : 에너지안전팀(02-2110-5445)
- 전문참고 : 산업자원부(www.moct.go.kr)

◎ 개정이유

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 8194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됨에 따라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응급조치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역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완화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역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기준 완화

(안 제4조 제1항)

- ①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② 구역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종전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최대전력수요의 70퍼센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6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갖추도록 그 기준을 완화함
- ③ 구역전기사업에의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시켜 구역 전기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전력의 직접구매자의 범위 확대(안 제20조)

- ① 전력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②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자의 범

위를 종전에는 수전(受電)설비용량이 5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전설비용량이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확대함

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대상사업 확대

(안 제34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 ①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산업의 해외진출과 전력산업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 ②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대상사업에 전력산업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전력산업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가함

라.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대상 및 범위

(안 제42조의4 신설)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이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응급조치의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 ② 전기사용상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는 설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등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로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소켓·접속기 및 전구류 등의 보수나 전압 및 전기시설용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수 등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③ 경제적 취약계층 등이 전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① 법제7조제5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이라 함은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7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말한다.</p> <p>②·③ (생략)</p> <p>제5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전려수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p> <p>제1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작성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은 「원자력법」 제2조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련·변환 및 가공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p> <p>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제20조(전력의 직접구매) 법 제3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라 함은 수전설비용량이 5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를 말한다.</p> <p>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p> <p>1. ~ 3. (생략)</p> <p>4. 전력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p> <p>5. 전력분야의 시험·평가·검사시설의 구축</p> <p>〈신 설〉</p> <p>〈신 설〉</p> <p>제42조의2(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①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p>	<p>제4조(전기사업의허가기준)①----- ----- ----- 60퍼센트-----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 -----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전력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공공의 이익-----</p> <p>제1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 계획의 작성 등) ①법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이하 이 조에서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이라 한다)----- ----- ②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에 대한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이 국가의 원자력산업과 관련한 정책에 부합할 것</p> <p>2. 원자력발전연료 제조시설의 공사공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p> <p>3. 원자력발전연료의 설계인력과 생산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p> <p>4.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p> <p>③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계획----- -----</p> <p>제20조(전력의 직접구매) ----- ----- 3만킬로볼트암페어-----</p> <p>제34조(기금의 사용)----- ----- 각 호----- ----- 1. ~ 3. (현행과 같음) 4. 전력산업분야----- 5. 전력산업분야-----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p> <p>제42조의2(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 ①-- -----</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로 한다.</p> <p>1. ~ 5. (생략)</p> <p>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입주가 예정된 시설</p> <p>가. (생략)</p> <p><u>나.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상영관</u></p> <p>다. ~ 아. (생략)</p> <p>7. · 8. (생략)</p> <p>② (생략)</p> <p>제42조의3(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p> <p>① (생략)</p> <p>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생략)</p> <p>2.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p> <p>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 · 전문점 · 백화점 및 쇼펍센터</p> <p>4. ~ 6. (생략)</p> <p><u><신 설></u></p> <p>7.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시설</p> <p>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p> <p>나. 산후조리원업 : 임신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p> <p>다. ~ 바. (생략)</p> <p><u><신 설></u></p>	<p>-----</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p> <p>-----</p> <p>가. (현행과 같음)</p> <p><u>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u></p> <p>다. ~ 아. (현행과 같음)</p> <p>7.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2조의3(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상영관</p> <p>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 · 전문점 · 백화점 및 쇼펍센터</p> <p>4. ~ 6. (현행과 같음)</p> <p>6의2.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업</p> <p>7. -----</p> <p><u><삭 제></u></p> <p><u><삭 제></u></p> <p>다. ~ 바. (현행과 같음)</p> <p>제42조의4(응급조치의 대상 등) ①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p> <p>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p> <p>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p> <p>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p> <p>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p> <p>② 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행하는 응급조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p> <p>1. (생 략)</p> <p>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변전설비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p> <p>가. 나. (생 략)</p> <p>3. ~ 5.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신 설></p>	<p>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p> <p>2. 누전·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전기사용 제한조치</p> <p>제61조의2(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p> <p>1.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p> <p>2. 전기에 의한 화재사고로 추정되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p> <p>가. 사망자가 2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3명 이상인 화재사고</p> <p>나. 재산피해가 3억원(해당 화재사고에 대하여 경찰관서나 소방관서에서 추정한 가액에 따른다) 이상인 화재사고</p> <p>다. 그 밖에 제1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규모의 사고로서 해당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화재사고</p> <p>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변전설비 또는 전압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共同溝) 및 전력구(電力溝)의 배전선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p> <p>가. 나. (현행과 같음)</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관련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p>

** 별표 3의 하단에 비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교: 장비의 경우 2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때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별표 4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73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108조제1항제1호의4	200만원
--	-----------------	-------

※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www.mocie.go.kr/법령정보) 또는 협회(www.keea.or.kr/고시 및 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업법(안전관리분야) 유권해석 사례

문의 | 민원봉사실 02-2182-0741~3

01

발전사업허가를 받아 용량 8,000kW/22900V 발전소공사를 진행중인 경우,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 분야별 선임인원수 및 경력년수, 관계법령에 관하여



❓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별표12]에 따라 전기·기계·토목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에는 발전설비가 8,000kW/22900V이므로 동 규정(별표12)『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1 발전설비가 (2) 및 나”에 해당되며, 선임인력 및 선임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분야 : 전기안전관리자 1인(전기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이상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이상인 자)과 안전관리보조원 전기 및 기계분야 각 1명
- 기계분야 : 기계설비의 안전관리대상범위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유자격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2. 2)

02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을 개인으로 하고 있는데, 서비스(제조)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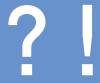
❓ 전기사업법 제7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 및 대행의 범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 등 다른 사업을 추가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사업은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5. 26)

03

- 일반상가중 임대건물이 아닌 분양상가는 건물 전체용량에 상관없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 다중이용시설 계약용량 20kW 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으로 하는데, 만약 분양상가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면 동일건물에서 분양상가는 제외하고 다중이용시설(임대점포)만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지



?? 전기사업법 제73조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 구분기준은 『산업자원부훈령 제53호 별표4』에 의하여 동일구내 또는 동일건물내에 있는 전기설비 계약전력은 각 공급단위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 다른 2개이상의 전기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동 훈령[별표4]의 각 형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위험시설은 계약용량이 20kW이상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시설이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위 사항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6. 20)

04

자가건물에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열관리기능사자격증을 이중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전기설비 800kW, 보일러 2.5T/O)



??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속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분야에 종사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29조 내지 제31조는 안전관리자의 겸직의 허용,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완화, 2종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 완화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동조치법에 의하면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열관리 기능사 등을 이중으로 선임할 수 있는 해당 조항이 없으므로 이중으로 선임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4. 11. 20)